

##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 관련 요건은 최근 친환경차의 기술 수준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2011년 이후 기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행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제4조, 별표1)

친환경차의 일반적인 분류에 맞춰 “저속전기차”를 삭제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

## 나. 기술적 세부사항(안 제4조)

1충전 주행거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차의 최저 기술수준으로,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의 운행제한 속도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 다. 에너지소비효율(안 제4조)

하이브리드차는 차급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기준과 일치시키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현실화  
초소형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5.0km/kWh)하고, 전기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현실화(경·소형 : 5.0km/kWh, 중·대형 3.7km/kWh)

## 라. 업무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류 명확화 (안 제5조, 별지 제1,2호 서식)

친환경차 요건 확인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친환경차 요건 확인을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재 신청서류를 명시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3, 전자우편: sare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수소자동차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소차량 안전성 및 사고현황, 안전교육의 효과성,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소승용차 안전교육은 폐지하되,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과거 사고사례(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등)을 감안하여 유지 (안 별표 31 제4호다목2)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dals21@korea.kr](mailto: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3호

관보 제19886호(2020.11.27.)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6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관리되는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권고)	관보 제19886호 2020.11.27. 367쪽 30줄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